

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832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11월 25일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법령 미반영 사항을 추가 반영하고, 잔액환급비율과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가맹점 등록 거부 요건에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를 추가함(안 제5조 제2항제4호 신설).
- 잔액환급비율을 100분의 60으로 명시하고, 환급 시 할인지원금 제외,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경우 환급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제4항).
- 시장의 과태료 부과·징수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함(안 제14조).

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조 중 “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,” 를 “ 및” 으로 한다.

안 제3조 제목 “(다른 조례와의 관계)” 를 “(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)” 로 하고, 본문 중 “다른 조례” 를 “다른 법령이나 조례” 로 한다.

안 제4조제2항 중 “법” 을 “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” 로 한다.

안 제5조제2항 중 “같은 조제4항” 을 “같은 조 제4항” 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,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

안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판매대행점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(할인비율 만큼의 금액은 제외)

한다). 다만 시장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잔액 환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안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4조(과태료)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
② 과태료의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와 같으며, 부과 징수 절차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 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 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 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 목상권의 활성화, 소상공 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서울시민 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 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,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사랑 상품권----- -----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 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사랑 상품권----- -----.</p>
<p>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<u>다른 조례</u>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	<p>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3조(다른 법령 및 조례와 의 관계) 상품권의 이용 활 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는 <u>다른 법령이나 조례</u>에 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
<p>제4조(상품권의 발행) ① (생 략)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. 다만 필요한 때에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4조(상품권의 발행) ① (현 행과 같음)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발 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. 다 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</p>	<p>제4조(상품권의 발행) ① (개 정안과 같음)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 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4조제 2항에 따라 발행일부터 5</p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 일원으로 하되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.</p> <p>제5조(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) ① 가맹점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,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.</p>	<p>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.</p> <p>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<u>법 제4조제3항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5조(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) ① 가맹점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<u>법 제7조제1항에 따라</u> ----- ----- <u>제출</u> <u>하여야 하며, 이는 운영대행사를 통한 가맹점 신청으로</u> 같음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제3호 및 <u>같은 조 제4항에 따라</u>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.</p>	<p>년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.</p> <p>③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5조(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제3호 및 <u>같은 조 제4항에 따라</u>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.</p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1.~3. (생 략)</p> <p>4.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시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</p> <p>③ (생 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 <p>제8조(운영대행사·판매대행점의 선정 등) ① 시장은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발행·유통·시스템 관리 및 운영, 유지보수 또는 상품권의 판매·충전·환전(이하 “발행등”이라 한다) 등 업무</p>	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이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</p> <p>제8조(운영대행사·판매대행점의 선정 및 준수사항 등)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판매·충전·</p> <p>환전, 가맹점 등록-----</p> <p>----- 업무</p>	<p>1.~3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4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</p> <p>5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③~④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8조(운영대행사·판매대행점의 선정 및 준수사항 등) ①~③ (개정안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과의 협약 내용을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은 발행등의 업무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	<p>의 일부----- -----.</p> <p>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----- -----.</p> <p>③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판매량, 재고량, 회수량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④ 판매대행점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의 100분의 60이상 100분의 80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.</p> <p>제14조(과태료 부과)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</p>	<p>수정안</p> <p>④ 판매대행점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(할인비율 만큼의 금액은 제외한다). 다만 시장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잔액환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.</p> <p>제14조(과태료)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</p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	<p><u>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와 같으며, 부과징수 절차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</u></p>	<p><u>해당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과태료의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와 같으며, 부과징수 절차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</u></p>

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서울사랑상품권”을 “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사랑상품권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유가증권을”을 “유가증권,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“가맹점”이란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가.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
(이하 “개별가맹점”이라 한다)

나.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(이하 “환전대행가맹점”이라 한다)

제3조 제목 “(다른 조례와의 관계)” 를 “(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)” 로 하고, 본문 중 “다른 조례” 를 “다른 법령이나 조례” 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발행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. 다만 필요한 때에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” 를 “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4조제2항에 따라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.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유통지역은” 을 “유통지역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의 종류와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상품권의 종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종류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.
 2. 권면금액은 1만원권, 5만원권, 10만원권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5조제1항 중 “희망하는 자는” 을 “희망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” 로, “제출하여야 한다.” 는 “제출하여야 하며, 이는 운영대행사를 통한 가맹점 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다.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시장은” 을 “시장은 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” 로,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,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

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이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가맹점 준수사항)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이유 없이 상품권의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현금거래자와 차별하는 행위
2.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

가.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

나.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

다. 「복권 및 복권기금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복권 및 타 상품권 등의 판매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

②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
2.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

제8조의 제목 “(운영대행사·판매대행점의 선정 등)” 을 “(운영대행사·판매대행점의 선정 및 준수사항 등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시장은” 을 “시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” 로, “판매·충전·환전” 을 “판매·충전·환전, 가맹점 등록” 으로 하며, 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” 를 “업무의 일부” 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시장은” 을 “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” 로, 같은 조 제3항 중 “발행등의 업무실적” 을 “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판매량, 재고량, 회수량 등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판매대행점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(할인비율 만큼의 금액은 제외한다). 다만 시장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잔액환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9조제2항 중 “시장은” 을 “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” 로, “할인판매” 를 “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판매를 할 수 있고” 로 하며,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재난발생, 경기침체,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13조와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.

제13조(환수 조치) 시장은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 할인액 등 부당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
1. 가맹점이 제6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
2. 사용자가 제7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

제14조(과태료)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
② 과태료의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와 같으며,

부과징수 절차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가맹점을 등록한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운영대행사·판매대행점의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 협약을 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서울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</u>과 <u>이용 활성화</u>를 지원함으로써 <u>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</u>, <u>소상공인의 소득향상</u>을 도모하여 <u>지역경제 발전</u>과 <u>서울시민의 복리증진</u>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서울사랑상품권”(이하 “상품권”이라 한다)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<u>서울특별시</u>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일정한 금액을 기재(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여 증표를 발행·판매하고, 그 소지자가 시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<u>유가증권을</u> 말한다.</p> <p>2. 3. (생략)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</u>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<u>서울사랑상품권</u>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유가증권</u>, 「<u>전자금융거래법</u>」 제2조제14호에 따른 <u>선불전자지급수단</u> 및 「<u>여신전문금융업법</u>」 제2조제8호에 따른 <u>선불카드</u>를 말한다.</p> <p>2. 3.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4. “가맹점”이란 <u>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상품권의 사용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.</u></p> <p>5. (생략)</p> <p>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<u>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</p> <p>제4조(상품권의 발행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. 다만 필요한 때에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u></p>	<p>4. “가맹점”이란 <u>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</u></p> <p>가. <u>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(이하 “개별가맹점”이라 한다)</u></p> <p>나. <u>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(이하 “환전대행가맹점”이라 한다)</u>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) <u>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</p> <p>제4조(상품권의 발행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상품권의 유효기간은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2항에 따라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.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③ <u>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 일원으로 하되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 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 설></u></p>	<p>③ <u>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-----</u> ----- -----.</p> <p>④ <u>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의 종류와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p>1. <u>상품권의 종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종류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.</u></p> <p>2. <u>권면금액은 1만원권, 5만원권, 10만원권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5조(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) ① <u>가맹점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,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시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~ 3. (생략)</p>	<p>제5조(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) ① <u>가맹점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-----</u> ----- <u>제출하여야 하며, 이는 운영대행사를 통한 가맹점 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시장은 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-----</u>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 설></u></p> <p>4.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시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</p>	<p>4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
<p>③ (생 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 설></u>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이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</p>
<p>제6조(가맹점 준수사항) <u>가맹점</u>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<u>판매행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</u></p> <p>가. · 나. (생 략)</p>	<p>제6조(가맹점 준수사항) ① <u>개별가맹점</u>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<u>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</u></p> <p>가. · 나. (현행과 같음)</p>
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 설></u></p>	<p>다. 「복권 및 복권기금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복권 및 타 상품권 등의 판매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</p>
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 설></u></p>	<p>②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1.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운영대행사·판매대행점의 선정 등)</p> <p>① <u>시장</u>은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발행·유통·시스템 관리 및 운영, 유지 보수 또는 상품권의 <u>판매·충전·환전</u> (이하 “<u>발행등</u>” 이라 한다) 등 <u>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</u>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② <u>시장</u>은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과의 협약 내용을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은 <u>발행등의 업무실적</u>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	<p><u>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</u></p> <p>2.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 <u>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</u></p> <p>제8조(운영대행사·판매대행점의 선정 및 준수사항 등) ① <u>시장</u>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----- ----- <u>판매·충전·환전, 가맹점 등록</u>-----<u>업무의 일부</u>----- -----.</p> <p>② <u>시장</u>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----- -----.</p> <p>③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은 <u>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판매량, 재고량, 회수량</u>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.</p> <p>④ 판매대행점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<u>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(할인비율 만큼의 금액은 제외한다)</u>. 다만 <u>시장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사업 및 지원) ① (생 략)</p> <p>② <u>시장은</u> 상품권 사용자에게 <u>할인판매</u>, 추가충전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거나, 가맹점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</p> <p>③ (생 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	<p><u>상품권의 경우에는 잔액환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9조(사업 및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----- --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판매를 할 수 있고, ----- . 다만, 재난발생, 경기 침체,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3조(환수 조치) <u>시장은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 할인액 등 부당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가맹점이 제6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</u> 2. <u>사용자가 제7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</u> <p>제14조(과태료) ① <u>시장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	② 과태료의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와 같으며, 부과징수 절차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